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자기학회 정관 제49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다년 회비로 하고 회원 자격에 따른 회비의 세부 내용은 회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통보한다.

제 5 조 (권리의무)

각종 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사업년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직장 또는 자택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본회에 통보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평의원회

제 6 조 (평의원의 선출)

1. 평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복식으로 하며, 평의원 정원의 1/2은 정기총회 6주전에 서신투표, 전자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잔여 1/2은 정기총회 4주전에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차기평의원의 정원은 당해년도 평의원회에서 확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평의원 정원의 1/2을 다득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평의원 정원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 순위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 7 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1. 차기 회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차기 평의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차기 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차기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 8 조 (이사의 선임)

1. 선출된 차기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임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재적수의 2/3 이내로 한다.

제 9 조 (선거, 피선거권)

평의원의 선거권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평의원 피선거권은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취득을 위하여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납부기한은 본회 회지에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전자메일, 전자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제10조 (선거결과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및 평의원 선거결과를 당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예회장의 권한)

1. 회장을 역임한 자를 명예회장이라 부른다.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당연직 평의원으로 선출되는 평의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12조 (감사의 기능)

감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인계)

신구임원은 차기 사업년도 개시 15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 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전에 각각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회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결석임원의 출석간주)

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6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또는 사안에 관련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그 의장이 되어 주요 업무를 처리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7조 (이사직무의 분장)

회장, 감사 이외의 이사 직무별 명칭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직무는 회장이 정한다.

1. 부회장(사업) 1인
2. 부회장(학술) 1인
3. 부회장(편집) 1인
4. 총무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사업이사 약간명
7. 학술이사 약간명

8. 편집이사 약간명

제18조 (회무의 분장)

본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장 수행한다.

1. 회장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포상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장이 된다.
2. 부회장(사업) : 사업기획, 대외협력, 국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부회장(학술) : 춘추계 학술대회 및 각종행사,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부회장(편집) : 본회의 학회지 발간,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여 인사, 행사계획을 담당하며 문서 및 서무 일반의 사무국 업무를 감독한다.
6. 재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여 예산의 집행, 결산 등 본 회의 재무회계를 감독한다.
7. 사업이사 : 사업부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과 시행을 담당한다.
8. 학술이사 : 학술부회장을 보좌하여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강연,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편집이사 : 편집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자기학 및 관련기술 정보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간사)

1. 본 학회의 각종 업무 및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의 구성은 상설 및 임시(특별)위원회별 필요에 따라 4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 (회무의 보고)

이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전년도 회무 및 회계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연구회

제21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설치 및 폐지)

1.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상설위원회와 임시(특별)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학술분과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연구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4. 제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위원회 및 학술분과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며, 학술분과위원회는 자기학회에 관한 학문과 기술발전에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상설위원회는 매회기마다, 임시(특별)위원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연구소 및 부설기관

제23조 (사무국, 연구소 및 부설기관 처무 규칙)

본 학회는 정관 제45조에 의거 사무국, 연구소 및 부설 기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채용 및 임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의 정원, 정년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소 및 부설기관) 연구소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사 업

제24조 (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 학회는 한국자기학회지와 Journal of Magnetics 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25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회원에게 1부씩 배포한다. 단 1년 이상 년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회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강연회, 견학회, 강습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강연회, 견학회, 강습회, 기타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학술교류)

학회는 국제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학문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28조 (국제학술교류규정)

국제교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9 장 포 상

제29조 (포상종류)

본 학회는 학회일반상, 특별상, 감사패 및 기념패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포상심사위원회)

포상심사위원회는 회장, 사업부회장, 학술부회장, 편집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 포상심사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 (포상규정)

학회일반상, 특별상, 감사패 및 기념패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포상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장 보 칙

제32조 (의결방법)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 (회의록)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제34조 (규정제정)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차기 평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1993년도 이후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199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칙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규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규칙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규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 규칙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